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형사처벌 완화〉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변작하거나 위·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유통시킨 자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는 내용임.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 ----- ----- <u>5</u> <u>년</u> ----- <u>1천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정부는 형벌 만능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투자·고용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고려 아래, 형벌 수위를 완화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안 제49조제1항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향하는데,

유통표준전자문서²⁾란 유통부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전자문서로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³⁾와 비교할 때 처벌이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운영 중('25.8.1.~)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이를 하향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측면이 있고,

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⁴⁾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기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데,

사문서인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미보관 또는 공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추가적인 검토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통표준전자문서 규정은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2002년 실제로 유통산업에서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던 적이 있으나⁵⁾,

현재 동 규정은 사문화되어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실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5) SBS NEWS, “유통산업 EDI(전자문서) 표준화 착수”, 2002.3.6.

향후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표준전자문서 규정 자체의 실효성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I 추진 배경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
 -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대상**으로 판단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
 -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23.2월) "한국에서는 CEO의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 사업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CEO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
 - 민생의 중심인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우 **형벌규정 미인지, 오인, 단순신고 누락**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
-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25.8.1.~), 자체 개선과제 발굴 중

II 추진 방향

-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목표} 정비**
→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연내 개선안 마련** 추진
- ①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
 - ① **배임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 정비 등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
 - ② 형벌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
 - ③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 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④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

◇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과제를 **1차로 마련·발표**

자료: 산업통상부